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현행 만25세인 입학연령 상한을 만27세로 상향〉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1881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 안 일 : 2025. 7. 31.
3. 회 부 일 : 2025. 8.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의 초급간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육군3사관학교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요건 중 연령 상한을 25세에서 27세로 높이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재 2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의 상한을 27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입학자격) ----- ----- -----.
1. 19세 이상 <u>25세</u>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1. ----- <u>27세</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475호)은 소위 임관 최고연령을 만27세 미만에서 만29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음.¹⁾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연령 상한은 현재 만2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과정이 2년임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소위 임관 최고연

1) 제15조(임용연령 제한)을 개정함.

령 만27세 미만과 연계되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소위 임관 최고 연령이 2년 상향된 것에 맞추어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2년 상향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저출산 심화²⁾로 인하여 병역자원³⁾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경쟁률은 2022년(입학) 4.5:1에서 2026년(입학) 1.7대 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 이상의 다른 사관학교와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군의 기간인 초급장교로 육성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연령 상한을 상향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사관학교 연도별 입학경쟁률]

구분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육3사
'22년	24.4 : 1	20.7 : 1	20.6 : 1	26.5 : 1	4.5 : 1
'23년	25.8 : 1	18.7 : 1	21.4 : 1	27.1 : 1	3.6 : 1
'24년	28.9 : 1	25.1 : 1	30.2 : 1	33.9 : 1	2.5 : 1
'25년	29.8 : 1	25.7 : 1	37.6 : 1	38.7 : 1	1.8 : 1
'26년	31.5 : 1	28.2 : 1	36.3 : 1	40.3 : 1	1.7 : 1

자료: 국방부 제출

- 한편, 군 장교를 배출하는 사관학교와 유사하게 경찰간부를 배출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찰대학의 경우에는 「경찰대학 설치법」 제3조에서 경찰대학 입학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서는

2) 구체적으로 1983년 2.06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까지 하락하여 전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이후, 2021년부터는 하락세로 전환하여 2025년의 총인구는 5,169만명임.

3)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데, 2020년 33.4만명이었던 만 20세 남성인구는 2022년 27.4만명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23.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⁴⁾⁵⁾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08년 입학연령 상한을 폐지하였고, 소방·경찰공무원도 기존 30세였던 응시연령 상한을 40세로 연장하는 등 공직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 변동현황]

구분	응시연령 상한		
	기본	변경	
공무원 임용시험령	5급 32세, 7급 35세, 9급 32세	-	'08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한 폐지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간부후보생 30세, 소방사 30세	소방사 40세, 소방간부후보생 40세	'12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한 변경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간부후보생 30세, 순경 30세	경찰간부후보생 40세, 순경 40세	'12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한 변경

※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개정안은 군인사법 개정에 맞추어 육군3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을 2년 상향하는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고, 「경찰대학 설치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경찰대학 설치법」 제3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입학자격) ①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일 것. 다만,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는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5) 다만,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군인과 다르게 임용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군인이 계급별 연령정년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60세로 모두 동일한 연령정년을 두고 있음.

- 참고로, 성일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241호)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243호)은 유사한 개정취지로 사관학교 입학연령의 상한을 현행 만21세에서 만23세로 상향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04